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10. 23.(금) 09:08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08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10월 22일에 있었던 제5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보고사항>도 회의 안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상정된 것이지요? 이것은 사흘 전에 상임위원 티타임 간담회에서 합의된 바 없는 의안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안 상정은 전원이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위원장님 직권 상정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직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중에 상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안건 상정도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안을 하시면 다 상정을 했고, 안건 상정을 반드시 모든 위원이 합의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티타임에서 차라리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 각 상임위원들이 의안 제출권이 있으니까 직접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티타임에서 논의를 2번, 3번 하다가 거기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이견이 생겨서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티타임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님 두 분은 상정하자고 하셨었지요. 그런데 저와 고삼석 위원님 두 사람은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마도 한 분 허원제 위원님께서도 그날 한마디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시다. 입장 유보입니다. 저는 그날 분위기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입장 유보가 2:2:1인데 이것이 어떻게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편성평가 정책과 소관입니까? 누구 지시를 받고 안건을 올렸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러시지요. 먼저 허원제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지요.

○ 허원제 상임위원

- 먼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지지하신 겁니까?

○ 허원제 상임위원

- 분명히 김재홍 부위원장님께서 퇴장을 하시고 난 뒤에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건은 일단 보고안건이니까 회의에 보고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보고 이후에 수십 일 동안 이 안건을 다시 우리가 의견수렴도 하는...

○ 김재홍 부위원장

- 좋습니다. 그러면 허 위원께서 그렇게 했다면...

○ 허원제 상임위원

- 제 이야기를 듣고 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의견수렴 절차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선 보고는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은 차후 일이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인데...

○ 김재홍 부위원장

- 퇴장한 뒤에 이야기했는지 물었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그 부분을 왜곡해서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 김재홍 부위원장

- 왜곡이 아니고 퇴장한 뒤에 발언이었기 때문에 몰랐고,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할까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 의사표현하고 하시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하세요.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티타임을 몇 차례 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데도, 오늘 이 안전이 왜 상정됐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통위 안전 상정 시에 의견이 똑 같아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의결안건으로 올라온 티브로드, 씨앤앰 같은 경우 저도 사무처 의견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시 제 의견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식의 의견개진이나 안전 상정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충분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을 가지고 논의했던 것은 직전에 2번 정도 회의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3번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전에 한 것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티타임에서 연거푸 3번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모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평가결과는 재허가나 재승인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생사여탈, 즉 사업권을 회수할 수도 있는, 사업을 불허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저는 그 평가제도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자들도 그 평가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논란이 된다면, 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당연히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처럼 큰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면 위원 개개인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안건과 달리 이 안건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행정예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안건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보자는 것,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까? 작년에 제3기 정책과제 논의를 하면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성에 대한 방송평가에서 감점비율 반영을 강화하자' 이것은 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결과를 어느 정도로 가중해서 반영할 것이냐?' 이 수치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던 것입니다.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에서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방송평가에 방송심의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그 비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행정예고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연구결과를 반영하자? 이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오늘 보고받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하게 해 주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 허원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아침 어떤 조간신문에 여권 추천

상임위원은 '나는 찬성과 반대 어떤 입장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발언을 안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티타임에서 합의가 안 된 것인데 다수결처럼 다수의사로 상정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안건이지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추진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첫째는 방송평가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방송평가를 수행하는 법정기구인 방송평가위원회가 제안한 바도 없고, 방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 중에 5명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한 분은 그날 처음 위촉장을 받은 회계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참이나 다름없는..., 또 다른 한 분은 여러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유보적이고 중립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절대다수가 반대였습니다. 이 평가위원장으로서의 저는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평가위원장,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 방송평가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하는데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곡한 것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보자" 그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회에 가서까지 제가 "7명 중에 5명이 반대입니다"고 밝혔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아닙니다" (...) 국회의원들이 헛갈려서 "두 분이 왜 그렇게 다르냐?" 하고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책임지고 이야기하는데 7명 중에 5명은 전면적으로 반대입니다.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정성 평가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것은 현행 방심위의 제재, 감점을 2배, 1.5배 높이는 것은 안 되겠다는 것이 전면적인 반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평가위원장인 상임위원의 보고를 무시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동료 상임위원이 연령, 경력, 지식 등을 떠나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저의 직무를 마이크로매니지먼트(Micromanagement)하게 분석적으로 들여다 보고 감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7명의 평가위원들에게 무기명투표를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7명 중에 5명이 전면 반대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투표는 안 했고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상임위원 한 분의 강력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투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사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진술한 이야기만 내놓고 "그러면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 전체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따로 위원장님과 사무처가 또는 어떤 상임위원이 추진해서 이렇게 추진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원 티타임 간담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고, 어제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방통위 회의 운영방식과 정체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의제를 지켜야 정당한 직무이고, 더군다나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언론의 자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성이 다분히 큰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강행 추진으로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안건이지만 이것은 삭제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이것이 삭제되지 않으면 저는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회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는 이 안건에 대한 논의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국회 미방위에서 방통위 회의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합의제 정신을 지켜서 해 달라는 여러차례 거듭된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통해 준 방송학계 연구용역의 결과를 11월 말에 보고 받고,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반영해서 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보고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11월 말에 연구용역이 나오지만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내도록 해서 행정예고기간 및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때 같이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12월에 의결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공모한 정책연구과제, 예산 3천만원짜리 연구용역이 다른 다양한 의견과 똑 같다면...

○ 최성준 위원장

- 같은 비중인지 많은 비중인지는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비중이 높다, 낮다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연구결과를 보고, 기본 자료로 삼아서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제안이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상임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안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존중하고 바탕으로 삼아야 할 기본요소이지, 행정예고 후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의사 중의 하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모한 정책연구결과와 그것을 심의한 방송평가위원회 의견과 방송평가위원회의 규칙 제안 등을 바탕으로 논의해서 안건을 만들고 추진해야지, 이것을 건너뛰어서 직접 사무처와 위원장이 또는 일부 상임위원 어떤 분이 추진해서 하는 것은 정말 비상조치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방송평가규칙은 올해 12월까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직권상정과 똑같은 비상조치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한 번 여쭙보지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올해 201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방송평가개선, 매체별로 특화된 평가기준 설정, 재난방송 및 공정성 관련 심의 규정 위반 시 감점 강화, 저희 주요업무계획에 '감점 강화'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다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말씀드리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작년 방송평가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 위원님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감점 강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당시에는 감점 강화를 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

○ 최성준 위원장

- 그 당시 평가결과를 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 바로 그런 감점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오늘 보고안건으로 이것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 하셨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부위원장님이나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결정을 해 주실 것이…, 이 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오늘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내용 까지도 개별 위원들이 의견을 이야기 할 것인지를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는데, ‘특정 상임위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기주 위원’ 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토론합시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한 것을 지나가기 전에….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안건을 오늘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실상 논의가 더 확대가 되므로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관련된 토론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작년에 제3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를 토론, 논의할 때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심위의 심의제재를 받으면 감점을 1.5배 내지 2배 높여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방심위의 심의제재에 바탕한 감점을 2배 높이겠다는 것은 안 된다. 공정성 강화는 찬성이다. 그러나 공정성 강화의 방법을 유일한 잣대인 방심위의 심의제재에 바탕해서 그 감점 나온 것을 더 높이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1.5배, 2배를 삭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작년 8월에 작성한 비전 및 주요정책 과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지요. 감점 강화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것은 어제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평가 대상, 하나는 오보·막말·센세이셔널리즘(sensationalism)에 대한 심의제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심의입니다. 저는 오보·막말방송에 대한 심의제재 감점을 강화하자고 했지, 논란이 많고 연구해야 할 대상인 방송언론의 보도내용을 공정성이 있느냐, 객관적이냐를 심의평가하는 것, 더군다나 그것을 다수결로 심의하는 것의 심의제재 감점을 강화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언론학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면, 바로 오보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것입니다. 막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언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송저널리즘 그 내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은 주관적일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해서 만들자는 취지에서 어렵게 논쟁을 벌여서 지금 연구과제 용역을 만들었고,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11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방송평가위원회의 본격적인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원 회의에서 논의하고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정당한 절차입니다. 제가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일관성 있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다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부위원장님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점 강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오보나 막말에 대한 감점은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어제 국회에서도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랬는데....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잠깐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보·막말과 공정성·객관성, 선거보도와는 다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 4일에 이 자리에서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접수했습니다. 그 접수를 할 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언한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이 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같은 취지, 제가 아니라면 같은 생각입니다. 언론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그것을 공부한, 강의하다 온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것은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희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지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연구용역 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지요. 겨우 하나 얻어낸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방송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감점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해서 검토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재난방송 및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 강화 추진'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이의제기 안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지금 저희가 의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보고안건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건을 만들어서 행정예고를 하고,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12월에 의결하자고 하는데 보고도 안 된다, 안건 자체를 논의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보고안건은 추진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어서 바로 행정예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고칠 수도 있고..., 행정예고가 그런 의미이지..., 우리가 행정예고를 하는데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안건을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절차가 잘못됐다고 거듭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 강화방안을 연구하자고 합의해서 집어넣었으면, 그래서 연구용역을 냈으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그 연구용역에 대한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는 방송평가위원회가 수행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하고 논의해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상임위원 회의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지, 정당한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다양하지 않은....

○ 허원제 상임위원

- 너무 일방적으로 시간을 이용하지 맙시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 발언권, 시간을 정하는데 지금 제가 발언 중입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 최성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왜 일방적으로 김 위원님에게만 그렇게 발언권을 주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발언을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아니, 내가 아까 신청했을 때는 제재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제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그런데 저에게 안 주고 왜 또 이기주 위원님에게 주려고 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지,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등 그런 식으로 발언하지 마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언론에서 쿼트(quote) 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언론을 보고...

○ 허원제 상임위원

- 아니, 그런 중요한 사안을...

○ 김재홍 부위원장

- 한 여권 상임위원이 했다고 해서 이기주 위원님은 아니고, 그러면 허 위원님이지요.

○ 허원제 상임위원

-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마치 사실인양 이야기해 놓고서는..., 제가 지금 그것이 왜곡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언론에...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해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왜곡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해명한 것입니다. 제가 왜곡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언론보도가 허위보도입니까? 잘못 쿼트(quote)된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서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그 언론에 항의해야지요. 그러면 저와 같이 항의합시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 서로 다투지 마시고요.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십시오.
- 최성준 위원장
 - 허원제 위원님께서는 허원제 위원님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그 언론보도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가만히 계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판단한 것인데 본 위원이 여기 와서 해명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됐다고 지나간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일단 허원제 위원님은 허원제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그런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아니, 제가 퇴장한 뒤에 이야기했다면서요? 제가 퇴장한 뒤에 뭐라고 발언했다면서요?
- 허원제 상임위원
 - 아니,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그 언론에 쿼트(quote)된 것이 그냥 자의적으로 한 오보네요.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이야기 들읍시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 허원제 상임위원

- 특정인이라고 거기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김재홍 부위원장
 - 한 여권 상임위원이니까….
- 허원제 상임위원
 - 그러면 꼭 저입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지요. 이기주 위원님은 분명히 찬성 입장이고, 위원장님도 찬성 입장인데 분명히 두 분은 찬성 입장입니다. 추진하는 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여권 상임위원은 허 위원님이지요. 다른 분 누구 있습니까?
- 허원제 상임위원
 - 그 기사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니,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여권 상임위원께서….
- 허원제 상임위원
 - 그것은 김 위원님이 혼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저에게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을 사실인양 그렇게 발언을 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 또 왜 그렇게 언론을 빗대서 언론에 편승해서 그렇게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까? 잘못 발언이 됐으면 제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면 그뿐 아닙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승복이 아니고 해명 겸해서 언론에 보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본인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명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는가보다’ 오케이 그랬는데, 제가 왜 곡했다느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동료 위원 간에….
- 허원제 상임위원
 - 어쨌든….
- 김재홍 부위원장
 - 언론계 선·후배 간에 어쨌거나 언론 자유를 놓고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할 위원 간에 이것은 야당 의원도, 미방위 야당 간사도 “언론 자유의 영역이다. 헌법적 가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제가 두 번째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언론 출신이고 허 위원님도 언론 출신인데….
- 허원제 상임위원
 - 저도 이야기를 좀 합시다.
- 최성준 위원장
 -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꾸하지 마시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저도 이야기를 좀 합시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왜곡했다느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두 번째….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제가 항상 주장한 것은 우리는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절대 언론사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로서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언론에 대한 통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일하게 방송사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제도적인 문제 이외에는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다릅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다릅니다. 토론은 계속 해야 합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그것이 어쨌든 지금 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그런 사안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점 강화되고 했을 때 이것이 방송사의 생사여탈 같은 것을 하는 것 아닌가 라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출발점이 절대 그런 내용과는 사실상 상관도 없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메르스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보도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당시는 국민적인 분위기가 사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했고, 저도 거기에 우리 기관을 대표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때는 다 여야 의원들이 공히 “이런 재난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이런 오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것이 무엇이야?”라는 질책과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한 것이 “우리 방통위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다. 단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기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방송의 내용 문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구다. 그러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그 내용에 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재허가라든지, 방송의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원들이 계속 그 반영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이 사안의 논의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요. 세월호 사건이 1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장 이 사안이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가 그것을 해 왔고, 또 연구가 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또 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다 준비한 내용을 그동안 티타임에서도 세 차례나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연말이 다 지나가니까 이것이 지금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2016년에 적용해서 2016년의 적용결과를 보고서 2017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이라는 세월이 또 더 흘러가야 지금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무슨 하자가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보고하는 자리이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의결할 때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모든 유관기관들과 함께 들여다보고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요. 이상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좀...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 최성준 위원장

- 차례대로 말씀하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이것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하자는 입장을 초지일관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시다만, 위원회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저로 하여금 양자택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을 진행하는데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여쭙 보고 싶은 것이 절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직도 저는 명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고, 또 방송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 방송평가위원회 직무에 제2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안'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위원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희에게 보고된 안건을 전제로 평가위원회가 리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전체를 리뷰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전체를 리뷰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항목은 다 일치하고….

○ 고삼석 상임위원

- 항목 말고 이 안건 그대로 해서 개정안을 리뷰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의견을 들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 개정안을 제안하자고 했습니까? 다수의 평가위원들의 의견은 제안 하자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안은 반드시 방송평가위원회의 제안이 있어야만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는 것이지, 그 제안을 거쳐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할 수 있고, 또 담당 과에서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법에 두는 이유는 논의 과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견수렴의 절차를 둠으로써 우리가 위원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현재 확보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 안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절차적으로 보완해 주십사, 그리고 보완한 다음에 보고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느냐, 아니면 졸속 내지는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제3기 방통위에서 논의한 과제 중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열띤 토론을 한 토론펙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기 정책과제 선정 때부터 시작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3, 4차례,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10시간 정도 토론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 일부 중 이야기하는 용어 중에 예를 들면 이번 평가규칙 개정안이 ‘관치방송이다’, ‘언론통제다’, ‘재승인시 탈락될 위험성을 급격히 높이는 제도다’ 그런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1년 7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온 저로서는 왜 그런 용어들이 나와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행정예고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제도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아마 처음에 저희가 보고받은 안대로 된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의 의견수렴, 토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의견수렴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 할 때는 항상 저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일단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좀 더 뛰어 넘어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현행 법·제도와 달리 개선안을 생각한다는 것

은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고, 또 실현 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저희가 믿고 모든 현행 법·제도 내에서 추진해야 할 절차나 행정행위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저희 방통위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방송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은 방송평가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부위원장님과 민간위원 중에 한 분만이 반대하는 것은 명확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 아니면 도 식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해가 됩니다. 다 그 중간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위원장이 계속 한 사람을 빼고는 다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자문위원회, 그것이 법정위원회든 임의위원회든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는 어느 특정 안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가감 없이 이야기만 하면 되고, 저희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논리, 이유,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이해해서 개별 상임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식은 저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송평가위원회를 포함해서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되도록 차후에 위원님들 간에 그런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히 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할 때 이 평가제도 자체가 잘못하면 방송사업자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다고 하시는데, 마치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우려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공성 강화에 대해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특히 지속적으로 종편PP의 오보나 막말, 편파방송의 폐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공히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약도 때를 잘못 맞춰서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면 좋겠습니다만 최근에 정부와 여당에서 언론 관련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억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탈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특정 연구소의 보고서를 가지고서 포탈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화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매체 등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댓글을 직권으로 삭제 할 수 있는 권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갖도록 한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언론 관련 기관들에서 전방위적으로 기획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든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도 이러한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추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앞서 발언했던 그 부분들은 어떤 개인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전혀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재홍 부위원장**

- 순서대로 합시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상당히 불쾌하고,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전 및 주요정책 과제와 업무계획을 가져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을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처음서부터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방심위의 심의가 공정하냐, 안 하냐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평가를 강화하는 것, 더구나 방심위의 결과에 따라서 감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언론을 통제한다든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든지, 그런 논의를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이기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순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고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감점을 1.5배, 2배로 강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작년 4월 이후 일관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성 평가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만들자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제3기 방통위 정책과제

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집 그것을 모두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전문가층과 국민 여론층이 반대해서 상황이 변하면 또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유독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지금 반대가 매우 많고 상임위원 간에도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인데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허원제 위원님께서 아까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분들은 다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보와 막말, 선정주의 방송은 언론의 자유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평가, 언론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의 본질입니다. 헌법적 가치이고,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방송언론은 신문과 다르게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의무가 강하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신문과 다른 사회적 책무에 기반한 심의평가는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언론의 자유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보고안전인데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안전입니다. 상정 자체가 미합의 안전입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다수의사니까 상정했다? 상정하고 나서 보고를 접수하면 본격 추진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예고하고요. 행정예고 하면 그다음에 그동안 다양한 의사를 반영한다, 그때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 연구용역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안전 토의할 때 우리가 반드시 존중하고 바탕으로 삼아야 할 기본자료이며, 기본의견이지 사후에 반영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다양한 의사 중의 하나는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들어가야 할 기본자료입니다. 평가위원회가 이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평가규칙 개정안이니까 사무처가 만든 안을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다수가 반대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기주 위원님의 의견은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그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한 사회자이고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제가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1차 다른 평가위원회의 교정을 받아서 제2차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반대이고, 다만 예외로 한 분은 그날 위촉장을 받아서 안 한 것이고, 한 분은 여러 방안을 내놓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다 반대이지요?”, “그렇다” 마지막으로 동의를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평가위원들이 모 아니면 도 식의 발언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학교수들 다수가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표현 방법, 그분들은 여기가 자기들 상근 직장도 아니고 전문가로서 와서 하고 있는데,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찬반을 말씀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학교수들의 특성상....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위원장님은 왜 그것을 모 아니면 도로 결론을 스스로 내서 자료를 정리하십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제가 결론 정리를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으로 방송평가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방송평가위원회를 바꾸자는 말씀이 시지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도 아니고….

○ 최성준 위원장

- 서로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사적인 자리도 아닌데 상임위원 업무분장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처음부터 했던 것이고, 각자 맡아왔으면 전문성도 쌓았고 그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 지난번에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하자? 정말 이기주 상임위원님의 입장과 그 논조를 알겠네요. 그리고 방송평가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입니까? 법정기구, 심의기구이고….

○ 최성준 위원장

- 심의결과에 기속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자문위원회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최종 결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갖지만 방송평가를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자꾸 낮추어서 자문위원회 회의인데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기주 위원님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것은 유감입니다. 방송평가위원장으로서 다른 방송평가위원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말씀드린다면 단순한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아주 중대한 방송평가를 수행하는 법정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감점 강화방안은 제가 조사해 봤는데 200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체계가 막강한 제1기 방통위원회에서 2009년 11월에 방통위 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평가 관련 감점을 확대하고 권고 의결만 받아도 0.5점 감점하는 것들을 추진했다가 논란을 많이 거친 끝에 2010년 말쯤에 안건이 폐기된 것입니다. 물론 국회로 말하면 회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계속 잠재해 왔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시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방송언론을 옥죄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합의해서 폐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또 몇 년 만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되살아나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세력이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고 민주헌정의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절대 다수결로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보고안건은 삭제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께서 공정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 방법이 문제인데, 그 방법으로 지금 현행 방심위의 기능과 권한을 높여주는 감점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공정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정성 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을 제안하셨습니까? 제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이 안전에 넣어서 보고안건으로 삼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렇지요. 그런데 따로 평가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처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심의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공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안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 안이 최종적인 안도 아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다 반영할 것이고, 또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모두 검토해서 12월에 의결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명예훼손 제3자 신고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찬성하는 위원님들과 반대하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토론을 격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단 보고안건으로 해서 안전을 넣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의결할 때 최종적으로 판단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위원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격렬하게 토론을 했지만, 보고안건으로 올려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됐으면 안 된 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든가, 그 의견을 종합해서 논의를 할 때 그때 의견이 반영 안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고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논의조차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논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논의절차를 지켜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또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정성 강화의 방법으로 유일한 잣대인 현행 방심위의 제재에 바탕한 감점 1.5배, 2배 높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의견이라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냐?’ 그렇게 뭉뚱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처 안 중에서 이것은 빠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방송평가위원회 같은 다른 기구도 따로 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 제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정교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법정위원회도 두었고 비싼 예산 들여서 정책연구 과제도 주었으면 그것을 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동안 논의를 했는데, 저는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개인적, 인간적으로 최대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가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펀드멘탈(fundamental) 자체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오늘 보고안건으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직접 관련된 의견만 간단히 내시고 정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씩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허원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상임위원

- 우리가 공정성 관련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부분에 관해서 심의규정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방송평가규정에 이미 제도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감점을 ‘주의’의 경우에는 -1점, ‘경고’는 -2점, 이것은 우리 제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 감점규정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떨겠느냐는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없는 제도를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제도로 만들어서 공정성 부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그동안에 있었던 각 방송사의 재허가 과정에서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우려는 저는 사실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 사회에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큰 사안이 터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 국회에서 제기 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그렇게 해서 방통위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경계하는, 언론사들도 스스로 경계하고 보도내용을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잘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자는 그런 취

지이지, 이것이 우리가 언론사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든지, 재허가 과정에서 무슨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쪽 국회 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해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가져왔던 7개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절반 이상 임기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졸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많은 법정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3개 가까이 되는 법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다 본인들이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심의기능이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을 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수렴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위원회의 의견이 마치 우리를 구속하는 듯이, 우리가 거기에 반드시 기속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스스로 그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 자체가 지금 갑자기 제기된 사안이 아니고,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보고를 해서 이제는 이 사안을 조금 더 치밀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 안건을 준비하기 위한 직전 티타임에서 또 그 전에 티타임에서 논의하다가 논란이 벌어졌고 합의가 안 된 매우 중대한 이런 안건을 다수 의사를 몰아서 다수결 방식으로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함께 논의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상임위원들만으로 다수 의사에 찬성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한다면 그것은 국가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저는 이것의 논의부터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처음부터 상임위원님 누가 의안 제출권이 있으니까 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누누이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티타임에서 논의하다가 안 되니까 다수 의사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합의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안건을 올리면 본격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예고가 나올 것이고, 그 행정예고기간 동안에 이견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발주한 연구용역 연구자들도 거기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까? 처음 논의하는 기본자료부터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중간에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평가위원회대로 놔두고 상임위원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을 보고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하러 법정위원회를 두며, 법적으로 방송평가규칙 제안권을 방송평가위원회에 둬니까?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직권상정이냐고 물어본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비정상적인 비상대권을 발동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요. 국회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렇게 논의해 오다가 진행하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이 없고, 매우 큰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런 안건을 다수 의사를 물어보고 다수결 방식으로 상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논의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 퇴장)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방송평가규칙 개정 이것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코 위원장님의 인품을 의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인식과 비평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안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저희 방송평가에 얼마만큼 더 반영할 것이냐,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란이 되는 결과를 저희가..., 물론 제가 법정 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이나 권위에 대해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방심위의 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안 대고 저희가 그 결과를 평가에 몇 배 정도 반영할 것이냐는 논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심위에서 법정제제한 사안이 계속해서 재심신청이 들어오고, 또 법원에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한 1년 전 이 전체회의 자리에서 ‘결정은 방심위에서 하고, 행정제재는 방통위에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패소된 건에 대해서 일절 우리가 의견도 못 내고 관여도 못 한다면 이것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TFT까지 만들었습니다. 당시 방심위의 심결내용에 대한 공정성 문제, 재심이나 번복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를 정비해 보자, 개선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뒤로 어떤 것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심위 결과를 방송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하자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번에 논의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몇 가지 점검해 봐야 할 사항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정회한 후에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보고안건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까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길게 보면 작년 제3기 방통위 출범 때부터 논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티타임 3번을 하는 동안 아주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오늘은 티타임때 보다는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방통위 위원님들 간에, 그리고 사무처와 토론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으로 보면 1년 7개월 동안 외부교수, 전문가들 중심으로 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청취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듣거나 직접 만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무처에서 정리한 페이퍼로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방통위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느냐하면, 이 안을 국민들에게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외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는 당연히 저희 행정기관이 거쳐야 할 가장 까다로운 관문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히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혹시 연구용역 결과가 완성본은 아니지만, 그 전에 초안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그것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방통위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완전히 오픈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논의해 보니까 감정적인 발언도 있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할 때는 저는 단어 하나씩 하나씩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듣다 보면 정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반박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의 의견개진이 있어서, 한 분이 쪽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쪽 할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단어 한마디를 했으면 그다음에 바로 그것에 대해 워드바이워드(word by word), 센텐스바이센텐스(sentence by sentence)로 토론을 해야 의견접근을 위한 더 진지한 노력이 되지, 그냥 쪽 이야기하니깐 저로서는 소화도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토론을 했고, 물론 간극은 여전히 큼니다만..., 그리고 방송평가위원회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견청취 범위를 각계각층, 국민들로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평가규칙은 2015년 말까지 개정이 되었을 때 2016년 1월부터 방송되는 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2017년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적으로 왜 이것을 보고하고, 행정예고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2015년 말까지 평가규칙이 개정되어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송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 평가 강화와 관련된 한 부분만 논의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방송평가규칙에 다양한 내용을 종전의 경험에 비추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정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결과까지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12월에 의결하겠다고 하는데도 보고조차 할 수 없고,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방심위가 공정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 ‘공정한 운영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방심위가 공정하지 못한 부당한 제재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방송사가 거기에 불복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방송평가에 있어서 그와 같이 불복을 해서 소송이 진행중이면,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만으로도 방송평가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

니다.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새로 개정되는 방송평가규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설사 방심위가 공정하지 못한 부당한 제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는 사정을 모르실리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퇴장을 하셨는데, 두 분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보고안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듣고 그 이후에 행정예고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고 위원님께서서는….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셔서요.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회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자는 취지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우선 잠깐이라도 생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숙려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렸는데, 제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아까 회의 초반에는 아주 히트 됐었다가 지금은 아주 쿨다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 최성준 위원장

- 고 위원님께서 정회를 희망하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5분 정회 】

【 10시 43분 속개 】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삼석 위원님께서서는 불참하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일단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서 중지됐긴 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전> 1건과 <보고안전>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전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니다.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티브로드 및 (주)씨앤엠 등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2015-57-253 ~ 25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주)티브로드 및 (주)씨앤엠 등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은 전차회의에서 안전 보고 및 피심인의 의견진술을 듣고 최종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한 안전입니다.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은 추가로 보고가 필요한 사항과 시정조치(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전차회의에서 앞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정조치(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전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피심인들이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항 [별표2의2] III.2.나목, IV.1호, V.1호, V.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8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 절차 개선,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징금 부과 필요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위반 건수가 많지 않으나 거짓고지, 중요사항 미고지 및 가입의사 미확인 등 다양한 위반행위 유형이 존재하고, 본 건과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2년 9월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가 필요합니다.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다만,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한 행위의 경우 과실에 의한 것으로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시청자에 대한 이용요금 차별 행위의 경우 상한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전체 SO의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2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조치만 명령하며, 거짓고지하거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와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 관련해서 한편 조사대상 40개 SO 중 위반 건수가 20건(월평균 1건) 이상인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등 35개 SO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20건 미만인 대구케이블방송(주), (주)티브로드대구방송, (주)티브로드서대문방송, (주)티브로드종로중구방송, (주)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 산정 방안과 관련해서 과징금은 기준금액 산정,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관련서비스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관련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데 2012년 9월 유사 제재 사례보다 전반적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중대성 약함'으로 하되,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율이 평균 이상인 경우 0.2%, 평균 미만인 경우 0.1%로 하고, '12년 시정조치 이후 재발한 경우에 대해서는 0.1%를 가산하며, 이 중 '12년 대비 위반건수가 대폭 감소한 SO는 0.05%를 차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율 평균 이상인 경우로서 '12년 이후 재발하였으나 위반건수가 감소한 (주)씨앤엠구로 금천케이블티브이 등 2개 SO는 0.25%, 최초 위반인 (주)티브로드낙동방송 등 11개 SO에 대해서는 0.2%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위반율 평균 미만인 경우로서 '12년 이후 재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반건수가 증가한 (주)티브로드수원방송 등 3개 SO는 0.2%, 재발하였으나 위반건수가 감소한 (주)씨앤엠강동케이블티브이 등 5개 SO는 0.15%, 최초 위반인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등 14개 SO는 0.1%를 적용했습니다. 필수적 조정은 과징금 부과 대상인 35개 SO 모두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로 30%를 가중하게 되며, 추가적 조정은 과징금 부과 대상인 35개 SO 모두 조사협력 20%, 조사착수 이전 위반행위 자진 시정 30%로 총 50%를 감경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했을 경우 티브로드 계열의 경우 (주)티브로드가 5억 7,250만원, (주)티브로드노원방송이 1,100만원,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680만원 등으로 해서 (주)티브로드 계열 전체 총 과징금 액수는 5억 9,030만원이 됩니다. (주)씨앤엠 계열의 경우 (주)씨앤엠이 4억 300만원, (주)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가 1,320만원으로 총 4억 1,62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주)티브로드 계열과 (주)씨앤엠 계열을 모두 합친 금액은 총 10억 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맨 마지막에 개별 SO별로 얼마, 그리고 합계가 쪽 나오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과징금 산정은 개별 SO별로 했고, 결국 부과 대상은 MSO가 됩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MSO 법인별로 됩니다. 예컨대 (주)티브로드 계열 같은 경우 3개 법인이 되고 그런 식이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지주회사 MSO (주)티브로드, (주)씨앤엠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 SO들...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방송사업의 주체인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티브로드는 21개 SO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법인은 (주)티브로드라는 법인이 하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안건은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많이 하고, 사무처도 많은 노력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로 과징금 부과 액수가 논의가 됐었는데, 저 나름대로 또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많은 논의도 있었고 또 사무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도 상당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 시정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할 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넓게 나가긴 나갑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SO들과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현장의 협력업체 직원 의견도 청취해 보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하는 제재조치나 시정명령이 현장,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만 가지고 당위론적으로 ‘이렇게 해야한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장과 많은 괴리가 있다면 서로 계속 걸돌게 되고 이런 행위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보면 교통법규위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통법규위반 사항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 한다면 그것은 또 너무나 형식적인 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할 때는 정말 SO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100% 다 했을 때, 월평균 위반건수가 얼마까지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전제로 하고 프로세스 개선이 일어나야지, 제로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다음에 또 그런 위반행위가 발생한다면 재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발했다고 해서 또 가중하는 식으로 너무 형식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를 함에 있어서 과거 2012년 조사했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형평성 이야기를 자꾸 할 수 있습니다. 시장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다를 수 있는데 자꾸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제재를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식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재를 하고 나서 혹시 앞으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라든가 또 이용자정책국에서도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이 일어나는 이러한 금지행위 위반을 해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간의 불공정 행위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어느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평·불만을 초래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피해보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요금을 과다 징수했다면 다시 반환해 주면 되고, 거짓으로 해서 가입을 유도했다면 그것을 해지시켜 주면 되고, 저는 그것이 1차적인 시정조치이고, 피해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SO들이나 IPTV 사업자들이나 이용자정책국에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런 이용자 불만이 야기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금지행위 위반사항은 진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적발하고 제재하는데, 제재가 과징금 부과 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이용자 불만을 줄이고 혹시라도 잘못돼서 이용자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고 이런 것이 저희의 근본적인 정책목표 내지는 규제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조사해 봐야겠지만 티브로드, 씨앤엠뿐만 아

니고 다른 MSO나 IPTV의 경우에도 중요사항 고지를 하지 않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되,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소비자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거나 또는 사업자보다 아무래도 약자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해서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제작역량 평가를 실시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15년 9월 제작역량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0월에 제작역량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올해 3년째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2012년부터 4년째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기본계획을 설명할 때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종전과 달리 올해에 개선이 된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제작역량 평가대상 사업자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을 주된 사업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중에서 방송평가를 받지 않는 방송채널사업자, 즉 등록PP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PP, 데이터 PP, 허가·승인사업자로부터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PP 그 다음에 공공채널, 평가 취지에 맞지 않는 종교PP는 제외하겠습니다. 이번 평가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항목은 자원, 프로세스, 성과 경쟁력을 구분 기준으로 해서 콘텐츠 인력 전문성, 콘텐츠 수상 실적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해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매우우수, 우수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우수채널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제작역량 우수상”을 수여하고, 미래부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10% 반영하여 등록PP의 방송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작역량 평가에서 작년도와는 다른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및 평가 배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향상 및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작비 항목(제작비 규모, 비중) 배점을 각각 75점을 10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콘텐츠 판권 보유 항목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거부사례가 많아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 제작’ 배점을 3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하고 유통 요인에 관한 배점을 5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 세부 개정(안)은 <참고 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역량 및 품질 제고라는 평가 취지에 맞지 않는 성인대상 PP는 금년부터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출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체일 1일당 1점씩 감점하여 처리하고, 10일을 초과하는 PP는 평가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평가참여 채널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라는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년부터는 상품권 지급을 중지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채널당 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일 보고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해 주시면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약 3주간 평가신청 자료를 접수받고 12월까지 실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월 제작역량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초에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 후 평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 계획대로 하면 4년째 하게 되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여기에 참여해 보니까 정말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정착이 많이 되긴 했으나, 앞으로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근거 신설이나 예산 증액을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PP 업계에 방통위의 제작역량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또 의외로 중요한 것이 저희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 평가를 통해 PP업계에 대한 실태를 아주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이 평가가 저희에게도 유익하고, 차츰 콘텐츠 업계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ISDI에서 지원을 받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실제 담당하는 분들은 고생스럽기는 할텐데, 앞으로 더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얻어진 시장 실태 자료들은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가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데 대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현재 방송법 제31조 방송평가에 간접적인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두 분이 작년에 안계셔서 잘 모르실텐데 작년에 평가하고 나서 앞으로 개선방안 이야기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방송평가에 대한 근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예산 확보도 좀 더 용이해질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김 국장님이나 김 과장님 전임 국·과장님들이 그런 제안을 해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검토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미래부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서 10%를 반영하고 있는데, 효과측면에서 제작역량 평가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더 많이 반영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방법도 저희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빨리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응하고, 국회 지적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14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 정책과제 및 '15년 1월 방통위 15년 업무계획에서 공정성 관련 엄격한 방송평가 정책 방침에 대해 밝힌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15년 5월에 지상파·종편PP 등 매체별로 3인의 위원 총 12인의 방송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7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규칙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7월 방송평가위원회의 워크숍과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방송사업자 의견수렴, 10월 16일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안건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내용영역의 평가 개선 기본방향은 내용영역의 평가 비중을 강화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및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선내용은 '방송 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막말·자극적인 방송, 편파방송 등을 지양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 수준을 전체적으로 1.5배 강화하고, 심의규정 중 공정성, 객관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심의와 관련된 규정 위반시 감점을 2배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쇼핑의 경우에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감점 수준을 2배 강화하고 나머지는 1.5배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오보 방지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오보 방지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법원의 정정보도 및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시 각각 -6점, -8점씩 감점하고, 선거 및 사회적 이슈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관련 오보방지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경우에는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주권 노력' 평가항목 변경입니다. '시청

자 주권 노력' 평가항목은 내용영역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 평가항목 운영영역과 통합하여서 항목명칭을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 의견 불만이 방송내용에 관한 사항인 것을 고려하여 운영영역에 있는 사항을 내용영역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크게 편성영역의 평가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방송편성의 다양성·균형성을 제고하고 재난방송·공익광고 등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편성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선내용은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감점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의 균형성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감점 수준을 1.5배 강화하고, 배점을 3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규정 위반이 적은 홈쇼핑·SO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입니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관련 지상파TV의 경우에는 종편·보도PP 등과의 배점 균형을 고려하여 지상파TV 배점을 60점에서 80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평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익광고의 편성 비율 확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상파TV와 종편PP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평가' 척도를 신설하고 10점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공익광고 편성 비율 및 전체 공익광고 편성대비 시급별 편성비율 등을 세부 평가척도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편PP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종합편성사업자로서 역할 강화와 지상파 사업자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종편PP에 대해서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45점 척도를 신설하여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영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 기본방향은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영역의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내용영역과 편성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상파, 종편·보도PP에 해당이 됩니다. SO·위성, 홈쇼핑의 경우에는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영역의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통 운영영역 4개 평가항목을 3개로, 12개 평가척도를 8개로 축소하고, 총점은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영역 배점을 축소하여 내용영역과 편성영역 배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체별 영역별 배점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별 세부 척도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부감사·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평가와 경영사항 공시의 적정성 평가를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용평가와 여성 고용평가 척도를 통합하고, 방송기술 투자 평가척도에 방송콘텐츠 투자를 추가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평가와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척도는 하나로 통합하고, 외주 관련 표준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 노력」의 평가척도 및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청자권익 보호 노력의 평가항목은 삭제하되, 운영영역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평가는 방송사 운영영역 관련 제규정 준수 항목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불만처리 적절성 평가척도는 내용영역의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평가 척도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내용영역으로 통합 이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개선 전·후 비교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O·위성방송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척도를 일부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공급하는 플랫폼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품의 채널 수, 공공·공익·복지·

지역 채널의 구성 정도 등을 평가하는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 척도를 15점으로 신설하고, '채널공급 계약 시 선정 기준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PP 만족도 평가'를 척도 내용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홈쇼핑 PP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품정보 유통자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민원감소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소비자원 민원 평가(20점)'을 신설하고 소비자원의 구제 조치 건수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규칙 개정(안), 신규조문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시점은 '17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하며, '16년도 방송실적부터 적용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오늘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11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행정예고 기간 중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12월 중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연구용역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 공정성...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 편성평가정책과 김종우 사무관

-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지요?

○ 편성평가정책과 김종우 사무관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11월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통상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면 중간보고를 한 번 받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사업 연구계획서 제출한 것보다 많이 진전된 연구는 아직 저희가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중간보고는 언제쯤 받았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계획된 기간 중에...

○ 김종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지난 9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그 연구용역 결과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11월 말에 제출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연구용역 결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어서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을 갖추는데 시간이 들 경우에는 최종적인 제출 이전에 연구용역의 주된 핵심 내용만이라도 우선 정리를 해서 페이지 형태로 먼저 제출해 달라고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분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연구용역 관련해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9월에 했다는 것은 중간보고가 아닌 것 같고, 연구진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무처에서 한 번 체크해 봤다는 정도 같은데 거창하게 중간보고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연구를 어디에서 합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연구는 한국방송학회에 의뢰가 됐고, 연구책임자는 공주대학교 법학과 권형돈 교수가 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일정상 타이트하니까 연구과제 결과를 드래프트든, 요약본이든, 중간 버전이든 연구를 수행하는 분이 직접 설명하든지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방송 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감점 강화'라고 해서 개정 사유, 개정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한 번 예를 들어서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편의 경우 현재와 개정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본문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의 경우 지상파는 100점, 종편은 85점인데 방송법 제 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위반시 감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주의 1.5점, 경고 3점, 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 6점,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5,000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 등이 되겠습니다. 단 공정성, 객관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심의 규정 위반의 경우 주의 2점, 경고 4점, 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 8점,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20점, 5,000만원 초과와 과징금 부과시 30점 감점 등이 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두 분은 계속 이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왔으니까 제가 하나 여쭙 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지상파 텔레비전이나 종편이 재허가·재승인 받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감점이 강화, 보완됨으로써 아주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심의규정 감점 강화로 모의분석도 해 봤습니다만 지상파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저 차이는 -1.8점 정도, 기존 사항과 개정안 사이에 -1.8점, 최대는 -7.2점, 그다음에 종편의 경우에는....

○ 이기주 상임위원

- 지상파 텔레비전인 경우에는 전체 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평가 점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최종적으로 재허가·재승인 점수를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또….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그리고 종편의 경우에는 최저 차이나는 것은 -7점, 최대 차이나는 것은 -12.4점 정도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평가요소의 하나이고, 또 재허가·재승인 때는 향후의 사업계획이나 방송발전 노력 등이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감점 강화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그 모의 시뮬레이션은 언제 언제 것을 한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2012년, 2013년, 2014년 실제 제재받은 건수를 3년 평균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내용을 이따가 브리핑을 할 때 분명하게, 물론 모의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것을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왜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시다만, 지금 적용시점이 2016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평가할 때 사용할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송실적에 대해서 적용이 되려면 2015년, 즉 올해 12월 말 이전에는 평가규칙이 개정되어서 공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역산을 하니까 지금도 많이 늦은 편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심사, 행정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검토, 규개위 심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좀 더 일찍 보고안건으로 상정을 하려 했으나, 위원님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 오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었다가는 12월 말까지 개정을 못할 수도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보고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2분 폐회 】